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27일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기업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 나.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및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지원의 제한대상을 정함.(안 제6조)
- 마.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정함.(안 제7조 )

- 바.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함.(안 제8조)
- 사.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아. 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자. 지원사항 중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br>○ 성 명:<br>○ 연락처: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우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6.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② 장애인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장애인기업은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 ②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기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회계계약심사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4. 경제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기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된다.

**제9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
|--------------|------------------------------------------------------------------------------------------------------------------------------------------------------------------------------------------------------------------------------------------------------------------------------------------------------------------------------------------------------------------------------------------------------------------------------------------------------------------------------------------------------------------------------------------------------------------------------------------------------------------------------------|
| 관련법령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br>○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br>○ 제9조(자금지원 우대)<br><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br>○ 제5조(자금의 지원대상 등)<br><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br>○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br><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br>○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br><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br>○ 제9조(계약의 방법)<br>○ 제29조(공동계약)<br><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br>○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br><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br>○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및 별표 1<br><input type="checkbo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br>○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br>“세부내용 별지 작성”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5조(자금의 지원대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외 중소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2. 시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및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자금의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  
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라. 벤처기업사업자  
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주 중소 제조업자  
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

- 아.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구조개선사업과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사업자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체인사업대상 소매업자
  - 자.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사업
  - 차. 공동창고를 설치(임차포함)하고자 하는 상업협동조합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
  - 카.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2. 시장정비사업자금의 지원대상
- 가. 시장정비사업자
  - 나. 기타 시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② 제1항 각호 기금의 지원대상의 사업별 용자조건, 선정기준, 용자절차, 용자금의 세 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 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의 품목별 직접 구매실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정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시행일 : 2011.1.1]

###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해 당 업 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br>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br>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건설업                   | F    |                                     |
| 운수업                   | H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br>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Q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br>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 도매 및 소매업              | G    |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금융 및 보험업              | K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R    |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br>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P    |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S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br>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소 요 비 용 : 약 6,400천원

| 구 분                   | 산 출 기 초                                                                                                                                                                    | 소요비용    |
|-----------------------|----------------------------------------------------------------------------------------------------------------------------------------------------------------------------|---------|
| 계                     |                                                                                                                                                                            | 6,400천원 |
| 일<br>운<br>반<br>영<br>비 | <p>○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 회의참석 수당<br/>           - 100천원(2시간 기준)×16명×4회(분기 1회) = 6,400천원</p> <p>※ 장애인기업의 재정적 지원은 판매촉진 및 우대할 사항<br/>           에 대하여 예산 소요액의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려움</p> | 6,400천원 |